

의안번호	2204599
의 퇴 인	박홍배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4.
추 계 번호	24B4279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7억 2,000만원(연평균 5억 4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(안 제8조의2)	2,720	-	-	-	-	2,720	544

주: 환경부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지역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비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2 (지역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·시행) 신설	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환경부장관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		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·시행 및 변경, 제출·공고,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
2	안 제8조의3 (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등의 이행상황 점검) 신설	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,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17조 (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)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<u>7.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지원 <신설></u>	재량규정
		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·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함(제2항) <u>4. 국가생물다양성전략, 시행계획 또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·시행 또는 이행현황 점검 등에 필요한 지원 <신설></u> <u>5.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교육·홍보, 그 밖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,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<신설></u> <u>6. 국가 및 지역별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개발·분석·검증·작성·관리 <신설></u>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8조의2(지역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·시행) 신설	○	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- 안 제4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, 안 제1항에 따른 시·도별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관련 추가재정소요만 추계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2	안 제8조의3(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등의 이행상황 점검) 신설	-	미대상: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행정 인력 등을 활용하여 국가·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임
3	안 제17조(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)	-	미대상: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전략 수립·지원 등 개정안의 생물다양성센터 업무 확대는 추가재정소요 없이 기존의 센터 행정인력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8조의2에 따라 17개 시·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므로, 추계 기간 중 첫 해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·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환경부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(‘24~‘28) 수립을 위해 1억 6,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어, 해당 단가를 적용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(안 제8조의2 신설)
 - 17개 시·도의 생물다양성 관련 현황 및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방식 등에 따라 그 소요 금액이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, 최근 환경부가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(‘24~‘28)에 집행한 금액을 평균 단가로

가정하면, 개정안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7억 2,000만원(연평균 5억 5,400만원)으로 추계됨

- 환경부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(‘24~’28) 수립 관련 비용: 160백만원
(관련 연구용역 100백만원, 공청회 개최 등 50백만원, 위원회·이해관계자 간담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수당 등 10백만원)
- 17개 시·도 × 160백만원 = 2,720백만원

[표 2]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	2,720	-	-	-	-	2,720	544

주: 환경부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지역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비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환경부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지역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비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